

碩·博士과정의 連繫性 확립*

李長茂
(서울大 機械設計學科)

大學院 교육의 質的 向上을 위하여 碩·博士課程의 통합 운영 또는 連繫體制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大가 시행하고 있는 碩·博士課程 連繫 進入銓衡 제도의 의의와 적용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 본다.

1. 序 言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매우 빈약하였던 大學院이 量的·質的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고, 특히 理·工系 大學院生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공계 대학원 교육이 碩士 위주에서 博士課程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하는 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 특히 博士課程 教育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碩·博士課程의 統合 운영과 連繫體制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서울大 工大 教務學長鋪로서 재직하던 1989년에 碩·博士課程 連繫와 관련하여 「大學院 入學試驗 및 學位論文提出 資格試驗 改善方案」(研究責任者 김창효 교수)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이를 기초로 連繫制度를 추진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연유로 편을 들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가 시행하고 있는 碩·博士課程 連繫에 의한 博士課程 進入銓衡制에 초점을 맞추어, 이 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밝히고 그 적용 범위와 한계,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國내·외 大學院

碩·博士課程 連繫 現況

大學院의 碩·博士과정 連繫를 入學試驗 및 資格試驗을 中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一般大學院의 시험 제도는 대동소이한데 서울대의 제도를 예로 살펴 보자.

석·박사과정의 입학시험은 教育法 제112조와

*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 서울大 工科大學 研究報告書인 「大學院 入學試驗 및 學位論文提出 資格試驗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연구책임자 김창효 교수)의 자료를 많이引用하였고 서울大 教務處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서울大學校 대학원 규정 제46조(入學査定)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 教育法 제112조 : 大學院의 수업 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大學院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大學, 韓國大學, 教育大學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規程 제46조 : 入學者의 選拔은 다음 각號에 따라 사정한다.
 1. 答答考査의 成績(大學院 課程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實技考査 成績
 3. 面接考査 成績
 4. 身體検査 成績
 5. 學士課程에서는 출신 고등학교 내신성적, 大學院課程에서는 學士 또는 硕士課程의 成績

이상의 教育法과 學則에 비추어 볼 때에 대학원 입학시험은 필답고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대학원 학위취득 과정상 필수 조건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教育法 제115조(학위수여증), 교육법시행령 제121조(대학원의 학위논문 제출), 서울대학교 학칙 제64조의 2(대학원과정의 졸업),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6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同 규정 제9조(外國語試験 및 綜合試験)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에 관계한 교육법시행령 제121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법시행령 제121조(대학원의 學位論文提出)

① 大學院에서 1년 이상 修學하고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外國語시험과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3년 이상 修學하고 전공과목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 2種과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은 大學院委員會가 실시한다.

③ 대학원에 있어서는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12학점으로 한다. 다만, 계절제 및 야간제 대학원에 있어서는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6학점으로 한다.

한편, 科學技術處 산하의 교육 기관인 韓國科

學技術院(KAIST)은 院의 碩士 및 博士課程 運營指針에 의하여 입학시험과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1970년에 공포된 한국과학원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대학원에 비하여 대학원 운영에서 伸縮性과 自律性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사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학생을 일반학생·산학재학생·연구원 학생(정부 출연 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위과정 이수)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박사과정 운영지침 제3조(재학생의 박사과정 진학)에 의하면, 碩士課程에서 1년 이상 全日制 授業을 받은 자로서 1학년(2학기) 간의 학업 성적이 해당학과(専攻) 쇠차 1/5 이내인 優秀在學生은 지도교수 및 학과主任教授의 추천으로 학사·연구 심의위원회에서 박사과정 入學試験의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에 進學하는 길이 열려 있다. 제8조(박사학위 取得要件)에서는 42학점(30학점의 연구학점과 기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최소 2년(4학기) 이상의 全日制 授業을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후 3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소위 早期博士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반 대학원은前述한 대로 教育法施行令 제121조에서 3년 이상 修學하고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비로소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석·박사 연계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박사학위 취득에 석사과정 2년을 포함하여 최소한 4년 반이 소요되게 되어 있다. 이제 外國의 碩·博士課程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美國 大學의 석·박사과정 입학·졸업 제도는 학교별로 다양하므로 하나로 둑어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보면 國內 制度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크게 다른 점은 ① 모든 入學査定을 학과 중심으로 乾類銓衡에 의거·실시하며, ② 일단 대학원(석사과정)에 입학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취직하거나 박사자격(또는 進入) 시

험에 거듭 낙방하여 퇴교 치분을 당하지 않는 한籍이 유지되고, ③ 졸업을 위한 논문 심사 및 자격시험은 지도교수가 주체가 되어 論文審査委員會 또는 資格審査委員會를 구성하여 학과별·학생별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 지도교수, 학과가 입학시험, 학점취득, 자격시험, 논문심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自律性과 융통성을 가지며 대학원 내에서 석·박사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MIT의 경우에는 석·박사과정의 구분없이 入學査定을 하며 박사학위를 원하는 학생은 대학원 입학 후 적당한 시기에 進入試驗(qualifying examination)을 치른다. 1차 낙방하는 경우에도 院의 稽이 유지되므로 계속 학점을 취득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美國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입학시험은 자격시험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자격시험은 다수의 전공 분야에 걸쳐서 하루종일 시행하고 출제 교수들의 구두시험, 학업성적 및 연구 진척도 등에 대한 지도교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當落을 결정한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論文審査와 병행하여 논문 내용 및 전공에 대한 구두시험을 중심으로 한 最終試驗이 부과된다.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논문 작성 이외에 석사졸업 자격시험을 부과하는 곳도 있으나, MIT와 같이 논문만을 요구하거나 U.C. Berkeley와 같이 논문 작성은 하지 않는 경우에만 졸업시험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日本大學院의 경우에는 所定의 필기·구술시험을 부과하는 東京大學 이외에 대부분의 학교가 書類銓衡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생을 결정하는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최소在學年限은 대부분(東京大, 北海道大, 東北大) 석사과정 2년을 포함한 5년으로 되어 있다.

獨逸의 工科大學課程은 修學年限이나 교육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합쳐 놓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工科大學의 Diplom-Ingenieur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과정은 보통 2년 간의 豐備課程(Vordiplom)으로 이 과정이 끝나면 工學의 기초분야와 전공 기초과목으로 구성된 Diplom-Vorprüfung이라는 예비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

험에 합격해야 [本課程(Hauptdiplom)에 진학할 수 있다. 보통 본과정은 3~4년이 소요되어 수료 후 전공에 따라 약 10~15개 과목으로 구성된 Diplom-Hauptprüfung이라는 본시험을 치르고 졸업논문을 제출하면 Diplom-Ingenieur가 된다. 독일의 공과대학에서는 논문 연구가 매우 중시되어 졸업논문 이전에 1~3개의 副論文을 제출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시험이나 석·박사 자격시험과 같은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박사과정 희망자는 개별적으로 희망 지도교수를 찾아가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응낙하면 박사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공과대학에서의 박사과정 교육은 과목 수강 등의 과정이 없고, 지도교수 소속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위논문이 준비되면 論文審査와 함께 구두시험을 거쳐서 공학박사(Doktor-Ingenieur) 학위를 받게 된다.

3. 碩·博士課程의 問題點

앞에서 검토한 국내·외 대학원의 입학시험,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 규정을 기초로 석·박사과정의 연계성 측면에서 일반대학원, 특히 自然系大學院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현재 일부 特殊大學院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대학원은 각종 시험 및 학위수여에 있어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대학원에 적용되는 教育法 및 同 施行令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 운영도 학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칙 및 규정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계 등의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이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學則 이상의 上位規程이 각 대학의 公約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公倍數에 속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극히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대학원이 자율적·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위 법·규정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만을 명시하고 대학이나 학과가 적합한 세

부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현행 대학원 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碩·博士課程의 連繫 과정과 이로 인한 연속적 연구의 중단’이다. 학생이 석사과정 입학 후 박사학위 취득까지 과다한 시험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즉, 석사 입학시험(영어 및 전공 등)을 치른 후 1~1년 반이 경과하여 碩士學位論文 提出資格 試驗에서 다시 영어와 전공 등의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석사학위 논문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박사학위 과정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또한 거의 동시에 博士課程 入學試驗에서 영어와 전공을 다시 반복하여야 하므로 석사 논문에의 集中度는 더욱 떨어진다. 유사한 시험을 박사과정 입학 후 博士學位論文 提出資格試驗에서 다시 반복하여야 하는데, 이 시기가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논문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美國 등의 외국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생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적절한 시기에 1회의 博士進入 資格試驗에 응시·합격하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석사 논문제출 자격시험, 박사과정 입학시험, 박사 논문제출 자격시험 등 무려 3배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석·박사 과정을 연계된 하나의 대학원 과정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두 과정으로 보는 시각과 법규 해석에 기인한다.

大學院이 석사대학원과 박사대학원으로 분리된 두 개의 대학원이 아닌 하나의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석사과정 입학시험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대학원 입학시험으로 통합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폐지하고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박사과정 전입시험(qualifying examination 또는 preliminary examination)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도 석·박사과정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 즉, 碩士課程에서 전공 24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 그 초과 학점은 동일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전

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일부만 제한적으로 박사과정 通算學點으로 算入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외국어 시험의 중복과 필기 위주의 시험 부과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석·박사과정을 연계시키지 않고 분리·운영함으로써 석사 입학 후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 4~6년 동안에 무려 4 차례의 영어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대학원 교육이 研究에 중점을 두고 語學이 연구의 수단으로 사용됨을 감안한다면, 외국어 시험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이학시험이 不實 學位의 남발을 억제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았으나, 前向的으로 생각할 때 시험 횟수를 과감하게 1회로 줄이고 외국어 시험을 외국어 과목 이수로 대체·인정받을 수 있는 등의 융통성 있는 평가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大의 현행 석사·박사과정 입학시험에는 영어 이외에도 전공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 그리고 학사 또는 석사과정의 성적도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시간의 영어 및 필답고사 성적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우수한 후보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체 및 연구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활동이 특히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해결책도 碩·博士 과정의 連繫와 관련하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필기시험 위주 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面接考査에 專攻 口述考査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여 점수화하고 入學試驗 전반을 학과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서울大는 대학원 입학시험에서 口述考査 및 面接評價의 點數化에 대한 학과별 의견 조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4. 碩·博士 連繫運營에 의한 博士課程 進入銓衡制 事例

서울大는 1990년부터 碩·博士課程 連繫 運營(제6차 대학원위원회 의결: 1989.7.25)의 일환

으로 일정 비율의 우수 학생을 입학고사 없이 박사과정에 진입시키는 일종의 無試驗 銓衡制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施行方案

석사과정 입학생 중에서 매 학년도 해당 대학(원) 및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과(전공)별로 일정 비율(모집 정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의 심사 및 절차를 거쳐 통과된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고사를 생략하고 博士課程에 진입시킨다(단, 그밖의 학생 및 本校外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박사과정 입학고사를 시행).

② 選拔對象 資格

碩士課程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博士課程 진학 희망 학생 중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전 과목에 합격하고 이듬해(금년의 경우 1992년) 2월까지의 학위수여 예정자로서 해당 학과(전공)에서 他學生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選拔推薦 基準 및 節次

博士課程 진학 희망 학생 중에서 학과(전공)별로 기준 자료(입학성적, 학업성적, 논문제출 자격시험 성적 등)에 의하여 판정한 후 추천한다. 선발 기준은 각 대학(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객관적이어야 하며, 他學生보다 우수한 학생이 選拔 推薦되어야 한다. 기준 자료 및 성적의 반영 비율은 각 대학(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각 대학(원)의 학과 교수회의 및 大學院 學事審議委員會에서 심사하여 本部 大學院委員會가 확정하고 그 결과를 5월에 발표한다.

④ 碩士學位 論文 및 學位授與

석사학위 논문은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심사한 후 학위를 수여한다. 단, 선발 확정된 자가 석사학위 논문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⑤ 進入選拔者에 대한 措置

진입 선발자에 대하여는 이듬해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고사를 생략하고 박사과정에 입학시킨다.

현재 서울大가 시행중인 優秀者 無試驗 博士課程 進入制度는 통상 학과에서 학생에게 구술

시험을 부과하여 학업성적 등과 합산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순위에 따라서 선발하므로 염밀히 말하면 무시험 전형이라고 할 수 없다.

당초에는 碩・博士 과정의 連繫로 박사과정 진입자의 과도한 시험 부담을 줄여서 연구에 精進하게 하는 동시에 우수 학생의 博士學位 早期 취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教育法 및 同施行令의 '碩士學位 소지자가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規程'의 제약으로 인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석사학위 없이 박사과정에 바로 진학하는 길은 막혀 있다. 다만, 碩・博士 連繫進入者는 他學生보다 1학기 앞당겨서(박사과정 1학년 2학기) 博士論文 提出 資格試驗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진입자는 입학시험 부담이 없으므로 박사과정 학점을 석사과정중에 보충할 수 있게 함으로써 學位 早期 취득의 길을 열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0년 5월에는 18개 대학(원) 중 공과대학의 13개 학과를 포함한 5개 대학(원) 23개 학과에서 碩・博士 連繫进入者를 선발하였다. 총 선발 인원은 91명으로서 전체 모집 정원 900명의 10.1%를 차지하였다. 특히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각각 모집 정원의 23.8%와 22.6%를 連繫制度로 선발하는 의욕을 보였다. 또한 시행 2차년도인 '91년 5월에는 자연과학대학의 8개 학과, 공과대학의 16개 학과와 2개 협동과정, 사범대학의 2개 학과를 통하여 총 11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는 전체 모집 인원 936명의 11.8%이다. 특히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이 각각 30.6%와 26.8%를 連繫課程으로 선발한 것은 이 제도가 이・공계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일찍이 운영하고 있는 韓國科學技術院의 금년도 早期(在學生) 博士課程 進入者는 化學科 3명, 經營學科 1명, 生產工學科 2명, 材料工學科 6명, 電子工學科 2명, 土木工學科 1명, 化學工學科 8명 등 총 23명이다.

전술한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碩・博士課程 連繫进入 제도 活用度는 보는 시각에 따라 대학별・학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선발 기준 및 반영 비율이 전적으로 대학 또는 학과의 자율에 맡겨짐으로써 학과간 기

준 차이로 인한 문제, 선정 과정에서의 주관에 따른 價質 개입의 위험, 조기 진입자와 다른 진학자 간의 갈등 또는 위화감의 조성 등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울대의 많은 대학과 학과가 아직도 이 제도에 침묵을 지키며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여 국소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학과들은 이 제도의 碩·博士課程 連繫 측면보다는 優秀者 博士學位 早期 取得 측면을 중시하여 選拔基準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학과이다. 필자가 속한 機械設計學科의 경우 '90년에 박사과정 입학 정원 14명의 50%인 7명을 선발할 수 있었으나, 아직 이 제도의 長·短이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우수자에게만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운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학부 성적 3.3 이상, 대학원 성적 3.7 이상, 대학원 입학 성적 상위 25% 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37명의 석사과정 학생 중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은 4명이었고 그중 2명이 지원하여 선발되었다. '91년에는 석사과정 입학시험 성적을 기준에서 제외시켰으며 有資格者 5명 중 4명이 지원,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다. 특이한 것은 이중 2명이 해외유학 또는 취업을 계획하였던 학생들로서 早期進學 資格의 영예가 주어진 후 박사과정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수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碩士 재학생들까지 상당 수가 올해 말의 정규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의 중요성도 인식되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도 향상되는 一石二鳥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금속공학과·기계공학과·원자력공학과·전기공학과·화학공학과·물리학과·분자생물학과·과학교육과 등은 定員의 50%를 이 제도로 選拔함으로써 外國 大學院과 같이 이 제도를 정착 또는 확대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碩·博士 連繫 選拔 제도를選擇的·制限的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全體的으로 100%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 結 言

전술한 바와 같이 大學院 教育이 뿌리를 내리 碩士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博士課程 중심의 교육으로 定着되는 轉變를 맞이하고 있다. 外國 大學院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碩·博士課程은 둘이 아닌 하나의 大學院課程으로 통합되어 課程履修 및 論文研究 기간중에 과다한 시험 부담을 줄이고 入試 및 學事運營이 대학 또는 학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과의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責任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질 수 있고 大學間·學科間 基準 및 規程 차이로 인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서울대의 碩·博士課程 連繫 進入制度는 教育法 및 同 施行令의 제약 속에서 시도된 連繫를 향한 實驗的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고 다른 대학원에 파급될 것인가는 大學院 教育의 連繫와 自律을 향한 각 대학 및 학과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또한 보다 바람직하면서도 시급한 것은 教育部가 大學院 連繫 確立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教育法 및 同 施行令을 과감하게 改正하여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대학과 학과의 自律에 맡기는 것이다. ■

〈参考文献〉

- 教育法(1984.8.2. 法律 第3739號).
- 教育法施行令(1986.12.1. 大統領令 第12001號).
- 大學院 規程(1980.3.24. 文教部 令第328號).
- 서울大學校 學則(1988.2.22. 改正 規則 714號).
- 서울大學校 學位授與規程.
- 서울大學校 教務處 博士進入 관련 資料, 1991.7.
- 서울大學校 教務 25210-138 公文: 1992 年度 大學院 進入生 선발 細部 시험계획, 1991.3.
- 韓國科學技術院 博士課程 運營指針, 1987.6.
- 김창호 외, 「大學院 入學試驗 및 學位論文提出 資格 試驗 改善方案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1988.9.